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293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제 32조의2)

제19조를 포함한 5개 조문의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나. 조사대상 통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20조)

시·도지사만 명시되어 있는 조사대상 통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구분 및 조사의 세부내용 개정(안 제21조)

기존 ‘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되어 있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체계에 맞게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로 구분하고, 조사의 세부내용을 개정함.

라. 국민건강영양조사원 구분 및 자격요건 확대(안 제22조)

‘영양조사원’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하여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하고, 각 조사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확대함.

마. 질병관리청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신설(안 제31조)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의 실시,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선발 및 운영 등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함.

바. 개인정보 등 처리 주체에 질병대응센터장 추가(안 제32조의2)

안 제31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질병대응센터장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사. 보건교육사 응시자격·자격기준 관련 별표 서식 개정(안 별표2, 별표4)
보건교육사 1급 응시자격 및 2급 자격기준을 각각 ‘2급·3급 자격 취득일로부터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여, 자격 취득이 선결조건임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국민영양조사의 주기)”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영양조사(이하 “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히”를 “특히 건강 및”으로, “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을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영양조사는 건강상태조사·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상태조사는”을 “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에 건강상태”를 “건강행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를 “제2항 및 제3항에”으로 한다.

1. 가구에 관한 사항
2.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 영양조사는 국민의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식품 섭취에 관한 사항

2. 식생활에 관한 사항

제22조의 제목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하고, 질병관리청에 각 조사원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둔다.

제2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영양조사원”을 각각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한다.

1. 건강조사원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일 것

2. 영양조사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영양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일 것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질병 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실시

2.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선발 및 운영

제32조의2제2항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별표 2의 보건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를 “자격 취득일로부터”로 한다.

별표 4의 보건교육사 1급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를 “자격 취득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를 “박사학위 취득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u>국민영양조사의 주기</u>)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u>국민영양 조사</u> (이하 “ <u>영양조사</u> ”라 한다) 는 매년 실시한다.	제19조(<u>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u>) ----- <u>국민건강영 양조사</u> (이하 “ <u>국민건강영양조 사</u> ”-----.
제20조(조사대상) ① 질병관리청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 여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에 대 하여 <u>영양조사</u> 를 실시한다.	제20조(조사대상) ① ----- ----- ----- ---- <u>국민건강영양조사</u> --.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노인·임산부 등 <u>특히</u>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u>영양조사</u> 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 <u>특히 건강 및</u> ----- ----- ----- <u>국민건강영 양조사</u> -----.
③ <u>관할</u>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와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이 된 사람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③ <u>질병관리청장 또는</u> ----- ----- ----- -----.
제21조(조사항목) ① <u>영양조사는</u> <u>건강상태조사·식품섭취조사</u> <u>및 식생활조사</u> 로 구분하여 행한 다.	제21조(조사항목) ① <u>국민건강영 양조사는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u> ----- ---.
② <u>건강상태조사</u> 는 다음 각 호의	② <u>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u>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신체상태

2. 영양관계 증후

3. 그 밖에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 식품섭취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조사가구의 일반사항

2. 일정한 기간의 식사상황

3. 일정한 기간의 식품섭취상황

④ 식생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가구원의 식사 일반사항

2. 조사가구의 조리시설과 환경

3. 일정한 기간에 사용한 식품의 가격 및 조달방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 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

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의 -----.

1. 가구에 관한 사항

2.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행태-----

③ 영양조사는 국민의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2. 식생활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④ 제2항 및 제3항에-----

-----.

제22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건강

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사·치과의사(구강상태에 대한 조사만 해당한다)·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생 략)

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하고, 질병관리청에 각 조사원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둔다.

1. 건강조사원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일 것
2. 영양조사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영양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일 것

② (현행과 같음)

③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양조사원 또는 영양지도원의 원
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
를 마련·시행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신 설>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국민건강영양조사원 -----

-----.

④ -----
----- 국
민건강영양조사원 -----

-----.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질병
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
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강조
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실시

2.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
조사원의 선발 및 운영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관리청장(법 제29조제3
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 <u>국민건강영양조사</u>----- ----- ----- -----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806